제289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9년 2분기 예산 전용 보고

2019. 8. 29.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2019년 2분기 도시재생실 예산전용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2분기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 내역 : 총 4건, 486,859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액		전용 후 예산현액
부서명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증	감	
총 계					1,382,837	486,859	486,859	1,382,837
소 계					305,259	6,859	6,859	305,259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 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서촌주민사랑방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12,400	-	2,859	9,541
			서울시 한옥포털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04)	-	2,859	-	2,859
			한옥자원센터 운영 및 응급119보수지원	사무관리비 (201-01)	290,000	-	4,000	286,000
			서울시 한옥포털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04)	2,859	4,000	-	6,859
소 계					1,077,578	480,000	480,000	1,077,578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등(도시개발)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사무관리비 (201-01)	760,000	-	480,000	28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300,000	-	300,000
				시설비 (401-01)	317,578	180,000	-	497,578

□ 전용사유

○ 〔한옥건축자산과〕 '19.1.1.자 조직개편 이후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초단시간근로자 운영 예산 전용

- '19.1.1.자 조직개편에 의한 주택건축본부에서 도시재생실로 부서이관된 '한옥건축자산과'에서 근무 중인 초단시간근로자(1명)의 보수예산으로

- 주택건축본부 내 **각 부서에서 근무 중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보수'의 경**우, 주무부서인 **주택정책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어
  부서이관 당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도시재생실로 **이체가 안 되어** 부득이 한옥건축자산과 동일 단위사업 내 '서촌주민 사랑방운영'과 '서울시 한옥포털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중 6,859천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
  ※ 도시재생실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각 부서에 편성

○ 〔도시활성화과〕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관련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액 전용

- 시범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자치구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선정 방식에서 **주민 희망지 공모 후** 주민역량강화 단계를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주민 희망지 공모사업이 당초 4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되어 6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 변경된 희망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동일 세부사업내 사무관리비 예산 480,000천원 중 300,000천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업 범위 증가 부분 반영을 위해 용역 설계변경에 180,000천원을 시설비로 일부 전용하였음